



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

공 보

제708호 2019. 7. 24.(수)



선	기관의 장
결	

고 시

- 제2019-83호 거창군계획시설(시설:유통업무설비) 실시계획인가 고시 2
- 제2019-84호 거창군계획시설(교통시설:주차장) 실시계획인가 고시 4
- 제2019-85호 도로명주소 고시 6

공 고

- 제2019-925호 「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」 전부개정 입법예고 8

회 램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: 거창군

편 집 : 기획예산담당관 (055-940-3043, 행정 3043)

※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(<http://www.geochang.go.kr>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

◎거창군 고시 제2019-83호

거창군계획시설(시설:유통업무설비) 실시계획인가 고시

『서북부경남거점 산지유통센터(APC) 시설보완·증축사업』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(시설:유통업무설비)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 고시합니다.

2019년 07월 25일

거 창 군 수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47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종 류 : 군계획시설(시설:유통업무설비)
 - 명 칭 : 서북부경남거점 산지유통센터(APC) 시설보완·증축사업
3. 사업시행 규모 및 내용

종류	시설명	위 치	시 행 규 모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고	
			결정면적	금회시행				
				대지면적	건축면적			연면적
군 계획시설	유통업무 설비	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47번지 일원	94,523.9	37,263.0	기존 11,157.8 증축 1,556.0	기존 13,049.28 증축 1,150.0	거창군 고시 제2008-43호 (2008.09.17.)	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성 명 : 거창군수(농업기술센터소장)
 - 주 소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
5. 사업시행기간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~ 2019. 09. 30.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: 붙임과 같음
7.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(☎ 055-940-358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유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비 고
						주소	성명	권리명	권리자	
합계	-	-	-	37,263	37,263					
1	거창읍 대평리	1347	창	33,819	33,819		거창군			
2	거창읍 대평리	543-22	구	42	42		거창군			
3	거창읍 대평리	1329-4	도	51	51		거창군			
4	거창읍 대평리	1344-2	답	167	167		거창군			
5	거창읍 대평리	1345-2	답	248	248		거창군			
6	거창읍 대평리	1347-15	창	1,208	1,208		거창군			
7	거창읍 대평리	1347-16	답	456	456		거창군			
8	거창읍 대평리	1347-11	답	1,098	1,098		거창군			
9	거창읍 대평리	1350-6	답	66	66		거창군			
10	거창읍 대평리	1350-7	답	13	13		거창군			
11	거창읍 대평리	1350-8	답	95	95		거창군			

◎거창군 고시 제2019-84호

거창군계획시설(교통시설:주차장) 실시계획인가 고시

『송정지구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공사』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(교통시설:주차장)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 고시합니다.

2019년 07월 25일

거 창 군 수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096-5번지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종 류 : 군계획시설(교통시설:주차장)
 - 명 칭 : 송정지구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공사
3. 사업시행 규모 및 내용

종류	시설명	위 치	시 행 규 모(m ²)	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결정면적	금회시행				
				대지면적	건축면적	연면적		
군 계획시설	교통시설 (주차장)	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096-5	1,159.3	1,159.3	385.96	385.96	경상남도 고시 제2014-249호 (2014.7.10.)	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성 명 : 최 민 식
 - 주 소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8길 21
5. 사업시행기간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~ 2020. 06. 30.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: 붙임과 같음
7.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(☎ 055-940-358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유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비 고
						주소	성명	권리명	권리자	
합계	-	-	-	1,159.3	1,159.3					
1	거창읍 송정리	1096-5	차	1,159.3	1,159.3	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8길 21	최민식			

도로명주소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. 7. 24.

거창군수

○ 부여한 도로명주소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14 등 5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(폐지)사유	비고
(별 도 열 람)				

○ 도로명주소 사용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는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7조의3 및 제8조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-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(☎055-940-3312)에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부여

일련 번호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고 시 일		도로명부여사유	비고
			도로명	도로명주소		
1	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1120	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가조가야로 405	2009-07-02	2019-07-24	거창군 가조면과 합천군 가야면을 잇는 도로	
2	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090-8	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14	2009-12-28	2019-07-24	1994년 거창읍 시가지 간선도로명 결정에서 유래	
3	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70-10, 169, 170-4, 170-8, 187-3	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지산로 1462	2009-12-28	2019-07-24	남하면 지산리를 지나 가조면으로 가는 도로임을 반영	
4	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613	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병곡길 293-14	2009-12-28	2019-07-24	서쪽 산수리 골짜기와 나란히 짜를 이루므로 붙여진 행정구역 병곡리를 반영한 도로	
5	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울리 362-1	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상울1길 94	2009-04-01	2019-07-24	상울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	

「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」 전부개정 입법예고

「거창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7월 17일

거 창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「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」

2. 개정이유

-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을 확대하고 인명피해 보상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농작물등 피해보상 제외대상을 정함(안 제3조 제2항)
 -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경작지에 발생한 농작물등 피해는 보상 제외
-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액 변경함(안 제4조)
 - 1) 현행 : 부상 또는 사망 시 최대 50만원
 - 2) 변경 : 치료중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1,000만원까지 보상

- 상해 :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
- 사망 :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및 장례비를 최대 1,000만원까지 보상

○ 그 밖에 법령 내용을 확인·재기재한 내용 삭제 정비

4. 개정조례안 : 붙임

5. 입법예고 기간 : 2019. 7. 18. ~ 2019. 8. 7.(21일간)

6. 의견제출

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(환경과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 방문 등

- 주 소 : (우 50132)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, 환경과

- 전화번호 : 055)940-3761, FAX : 055)940-3759

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의 기준·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 산정기준)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·임산물·수산물(이하 “농작물등”이라 한다)의 피해보상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$\text{피해보상액} = \text{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유사 농작물등에 대한 거창군 농산물 도매 시장 경락가격} \times \text{피해면적} \times \text{피해율}$

제3조(농작물등의 피해보상 우선 및 제외 대상) ① 군수는 농작물등 피해보상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.
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
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3. 70세 이상인 사람
4. 그 밖에 영세한 농가 등 군수가 우선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작지에서 발생한 농작물등의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4조(인명피해 보상액)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의 피해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다만,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1,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.

1. 상해: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
2. 사망: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및 장례비를 최대 1,000만원까지 보상

제5조(유해야생동물 포획 지원)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.

②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에게 포획 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의 적용례)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」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.

관계법령

□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18. 10. 16] [법률 제15835호, 2018. 10. 16, 일부개정]

제12조(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(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나 농업·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2.>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,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·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·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·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2.>

1.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
2.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
3.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12조에 따른 생태·경관보전지역
4. 「습지보전법」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
5.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
6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
7.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

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, 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 7. 28.]

□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[시행 2018. 7. 10] [대통령령 제28578호, 2018. 1. 9, 일부개정]

제7조(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)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: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울타리·방조망(防鳥網)·경음기(警音器)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
2. 피해보상기준: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·임산물·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

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·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[전문개정 2012. 7. 31.]

□ 「야생생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·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」 [시행 2019.3.21] [환경부고시 제2019-59 2019. 3. 21. 일부개정]

제15조(피해보상액 산정) 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.

② 농작물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농작물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.

③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,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, 장제비로 최대 1,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. 다만,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.

제22조(조례제정) ①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. 다만,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제정한 조례가 있는 경우 그 조례에 따른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·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제8조, 제12조, 제13조, 제14조, 제15조, 제16조 규정을 자체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.